

수 신 : 전회원
참 조 :
제 목 : 비상장법인 합병가액 평가 관련 유의사항(안내)

1. 귀 회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.
2. 금융감독원에서는 비상장법인 합병가액 평가 관련 유의사항을 본회에 통보해온바, 동 내용을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(www.kicpa.or.kr → 공지사항)에 등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비상장법인 합병가액 평가 산정시 유의사항 1부.끝.

한국공인회계사회



<붙임>

비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정시 유의사항

1. 평소 우리원(금융감독원)의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최근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병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발견된 주요 오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합병가액 산정 및 외부평가업무 수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① 본질가치 산정시 負(-)의 자산가치 또는 수익가치는 그대로 합병가액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'0'으로 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됨
 - ② 상대가치 산정과 관련하여
 - 평가대상 비상장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의 평균가액이 負(-)인 경우에도 負(-)값 그대로 상대가치에 반영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
 -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 제7조에서 정한 유사회사 기준을 만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3사 이상인 경우 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법인을 유사회사에 포함하여야 하며, 특정회사만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됨
 - 비상장회사 업종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회사 업종분류 기준과 같도록 분류하여 유사회사를 선정하여야 하며, 증권신고서*에 업종분류 근거를 기재하고 외부평가기관도 외부평가서에 타당성에 관하여 기재하시기 바람

* 제2절 합병등 가액 및 산출근거 / 외부평가 / 평가의 방법

- 비상장회사와 유사회사의 주식 액면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조정 없이 유사회사의 보통주 주가(명목주가)를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여야 함
- ③ 합병가액 산정을 위한 총발행주식수에는 보통주 외에 상환우선주를 포함한 우선주도 합산하여야 함
- ④ K-IFRS 도입으로 인해 '11년에는 상장법인들의 직전사업연도(K-GAAP)와 최근 분기말(K-IFRS) 적용회계기준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 바,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상대가치 계산은 유사회사가 상장법인과 동일한 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한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

※ 관련 규정 :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 제5조 내지 제7조